

도 보

전라남도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17-1 호

2017년 1월 2일 (월)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전라남도
JeollaNamdo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도보편집실 ☎061)286-2073

목 차

◆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97호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97호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304호(2016. 8. 1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7. 1. 2

전라남도지사

□ 산업단지 개요

1. 산업단지의 명칭 및 관리기관 (변경)

- 명 칭 : 지정 -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변경 -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조성사업
- 관리기관 : 영광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일원
- 면 적 : 지정 - 1,640,662㎡
 변경 - 1,651,848.7㎡

3.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개발기간 : 지정 - 2009년 ~ 2011년
 변경 - 2009년 ~ 2013년 3월
 (1단계 : 2012년 2월 29일, 2단계 : 2013년 3월)
- 개발방법 : 민 · 관합동공동출자개발방식

4. 조성목적 (변경없음)

-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지향적인 첨단산업을 유지하여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5. 추진경위

- 2009. 05. 20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9-235호)
- 2009. 11. 27 :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9-463호)

- 2010. 02. 05 :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4호)
- 2011. 07. 05 :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주요업종배치계획 변경)
(전라남도 고시 제2011-204호)
- 2011. 10. 05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명칭변경)
(전라남도 고시 제2011-333호)
- 2011. 11. 25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공구분할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
(전라남도 고시 제2011-412호)
- 2012. 02. 13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단계 확정측량)
(전라남도 고시 제2012-23호)
- 2012. 02. 20 : 1단계 준공인가 승인
(전라남도 공고 제2012-180호)
- 2013. 03. 13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3-66호)
- 2013. 05. 03 : 준공인가 승인
(전라남도 공고 제2013-412호)
- 2016. 08. 11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업종배치계획 변경)
(전라남도 고시 제2016-304호)

②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 기본 방향 (변경없음)

- 가. 지역특성 및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되 명품산업단지로서의 신개념을 실현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
- 나. 기능별 개발수용에 따라 주변지역의 여건 및 계획지구의 특성에 맞게 공간을 구분하며, 친환경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 공간 도모
- 다. 단지 내·외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실정에 맞고 장래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
- 라. 토지자원의 생산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
- 마. 각 기능 간 연계체계를 고려한 공간배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단지의 생산성, 쾌적성은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도모

2.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640,662	증) 11,186.7	1,651,848.7	100.0	
산업시설용지	1,096,110	감) 1,829.4	1,094,280.6	66.3	
지원시설용지	42,650	증) 7,218.0	49,868.0	3.0	
공공용지	308,532	감) 3,936.5	304,595.5	18.4	주차장, 유수지, 정·배수장, 폐수처리장, 농업기반시설, 하천, 도로
녹지용지	193,370	증) 9,734.6	203,104.6	12.3	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3.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입주대상 업종 (변경)

1) 산업시설구역 (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아래 표에 명시한 업종. 다만, 우선순위에 해당 되어도 입주심사 결과 입주가 부적격한 기업은 신규입주를 제한

구분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업종명
일반 제조업(C)	C10	식품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M70	연구개발업
업종생략	-	산업시설 면적의 30% 이내, 업종제한 적용

제한업종				비고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10			식품품 제조업	
	C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011	도축업	
		C10110	도축업	

제한업종				비고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C2011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C2012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C2020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C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C20202	복합비료 제조업		
			C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C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203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C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C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C2041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C204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C20412	농약 제조업		
		C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C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C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C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C204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1		고무제품 제조업				
		C2211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C22112	타이어 재생업		
C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C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C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C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C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제한업종		비고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C2321 일반도자기 제조업	
	C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C23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C23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C232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C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C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C232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C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C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C23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C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C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C23311 시멘트 제조업	
	C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C233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C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C23322 레미콘 제조업	
	C23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C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C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C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1 석제품 제조업	
	C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C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C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91 아스콘 제조업	
	C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C23999 그 외 기타 분류인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C25922 도금업	
	C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전기업 (전력시설용도만 해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산·재생에너지 발전업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다만, 공장부지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한함

2) 지원시설구역 (변경없음)

-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용도의 업종

나. 입주기업체의 자격 (변경)

1)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집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 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류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에 의한 수의계약 공급대상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은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공공용지나 가동 중인 공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행위 허용)

2)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집법」 제44조 제1항 규정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은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공공용지나 가동 중인 공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행위 허용)

3) 공공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다. 입주 우선순위 (변경)

1) 산업시설구역

- 1순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공고일 현재 본사와 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기업체)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2순위 : 영광군 및 전라남도과 MOU를 체결하거나 입주추천을 받은 업체로서, 입주면적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 3순위 : 1순위 협력업체, 기타 입주희망업체
- ※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2) 지원시설구역

- 경쟁 입찰 낙찰가격 순위(산업법 시행령 제40조6항3)
- ※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영광군 기업유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목 적

-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입주자격 적정성 심의

▶ 심의기능

- 산업단지 및 주민에 미치는 영향
- 산단 입주 자격 적정성 등 산단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심층 분석 심사
- 군 시책 부합 여부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 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10인 이내
- 구성위원 : 환경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주민대표 등 시장이 위촉
- ※ 실무 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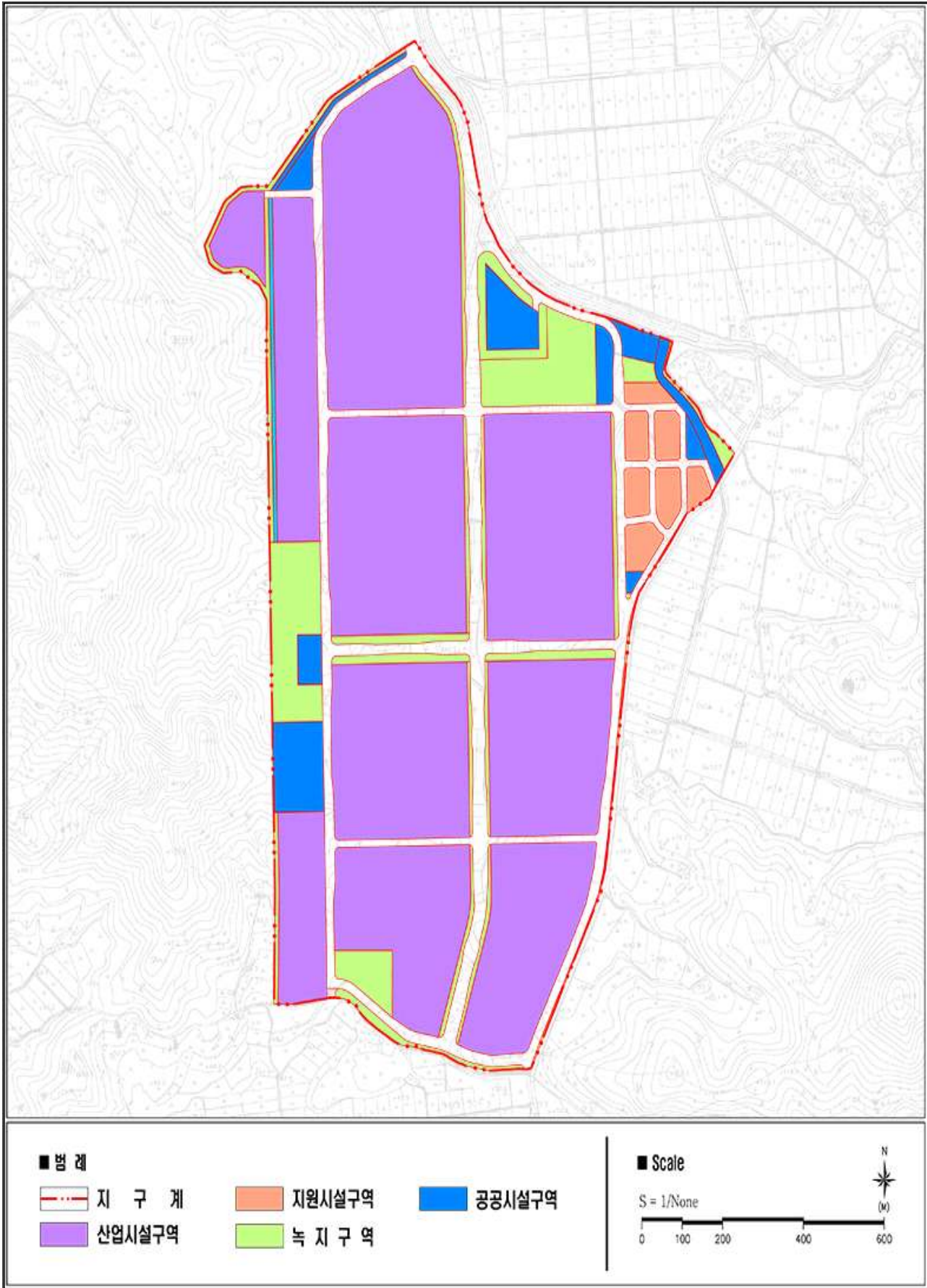
4. 산업단지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도별 구역면적 (기정)

(단위 : m²,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녹지구역	공공시설구역
1,640,662 (100.0)	1,096,110 (66.8)	42,650 (2.6)	193,370 (11.8)	308,532 (18.8)

나. 용도별 구역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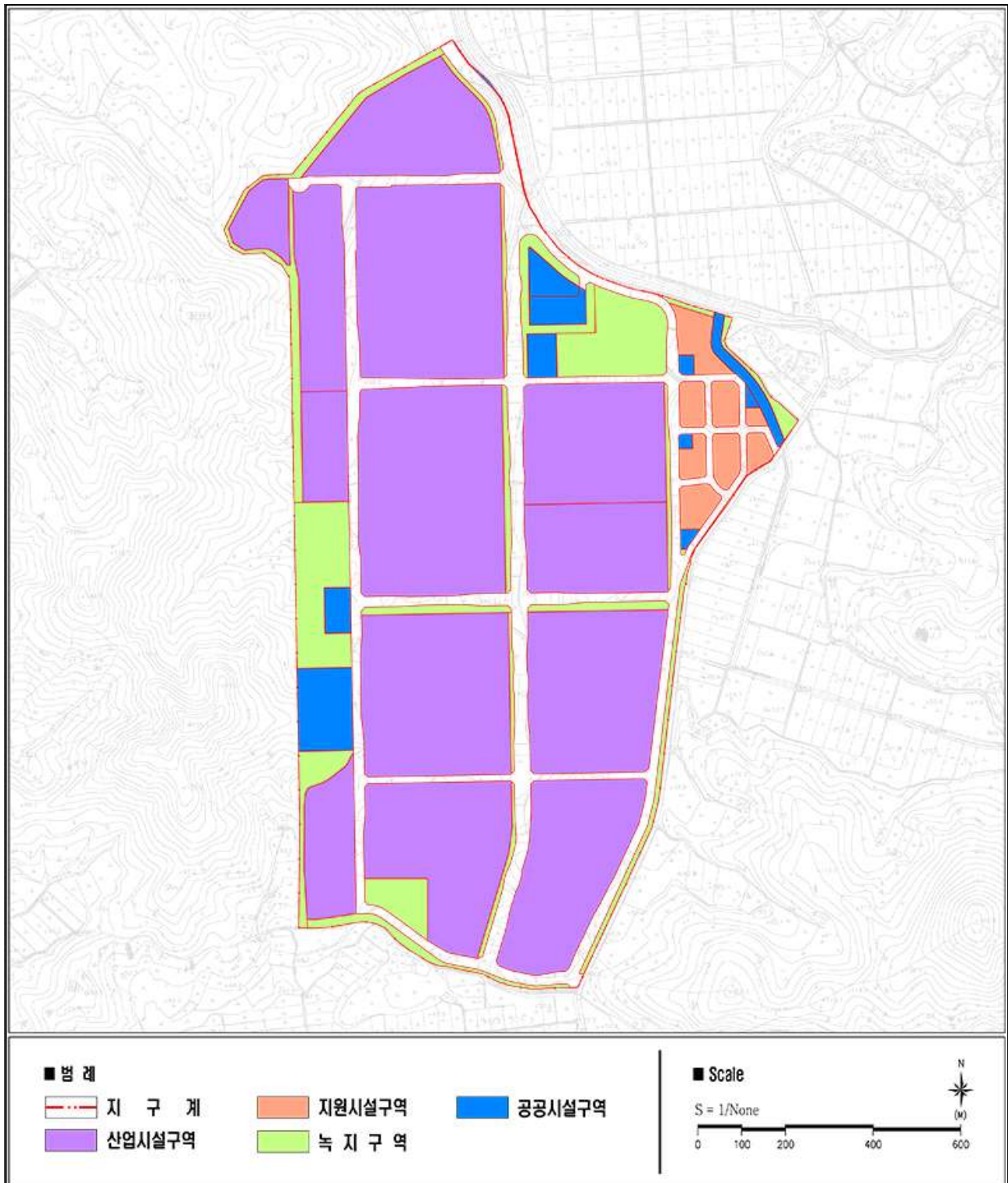


가. 용도별 구역면적 (변경)

(단위 : m²,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녹지구역	공공시설구역
1,651,848.7 (100.0)	1,094,280.6 (66.3)	49,868.0 (3.0)	203,104.6 (12.3)	304,595.5 (18.4)

나. 용도별 구역도 (변경)



다.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해당공장의 부대시설
- 「산집법」 제2조 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다만, 공장부지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공장(부대시설 포함), 창고시설

2)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으로써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및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6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의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4) 녹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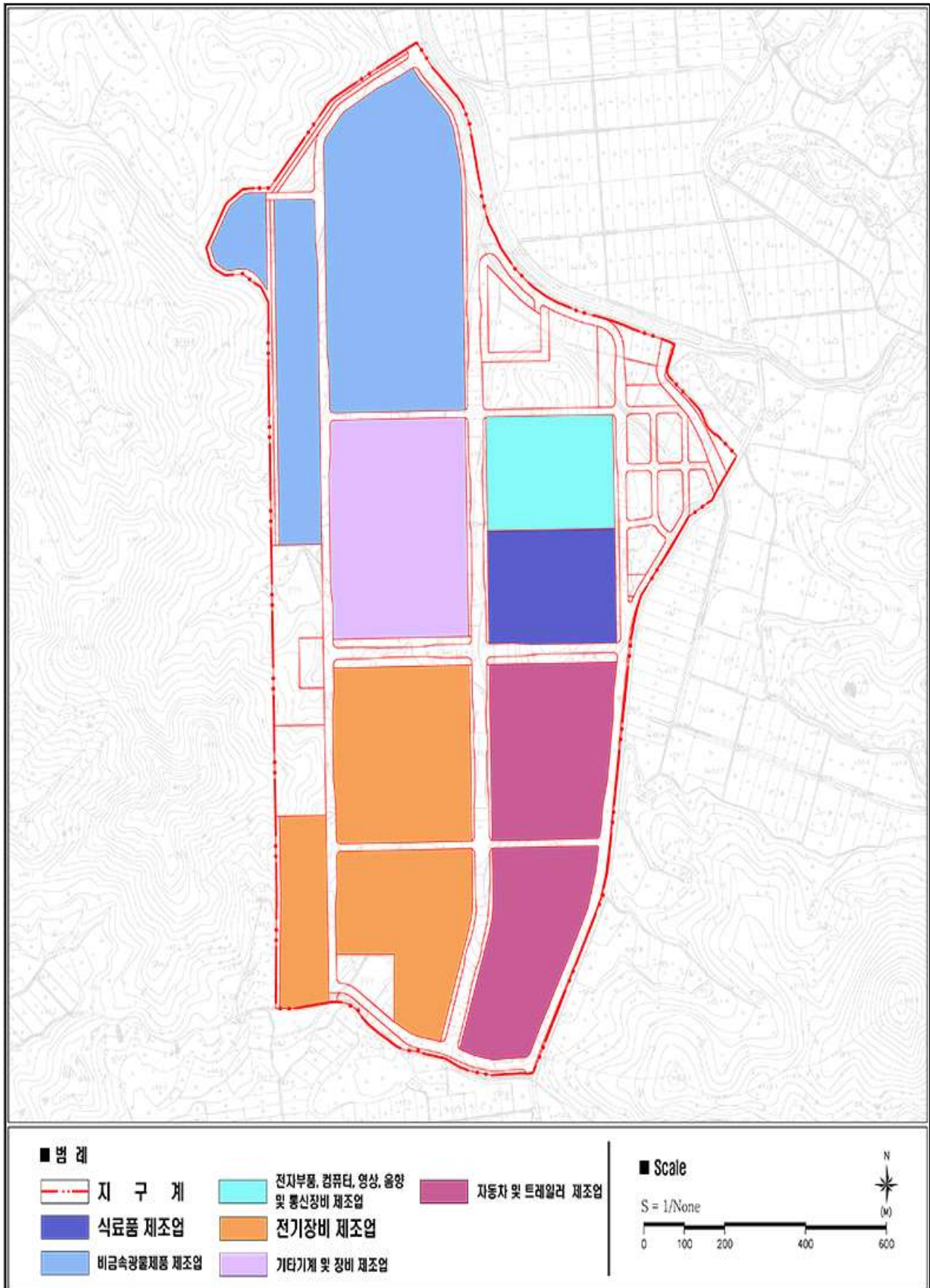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5.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업종별 배치면적 (기정)

구분	코드	업종명	면 적(㎡)	구성비(%)	비고
산업시설용지			1,096,110	100.0	
일 반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75,490	6.9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16,240	28.8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5,600	6.9	
	C28	전기장비 제조업	269,160	24.6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5,550	14.2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4,070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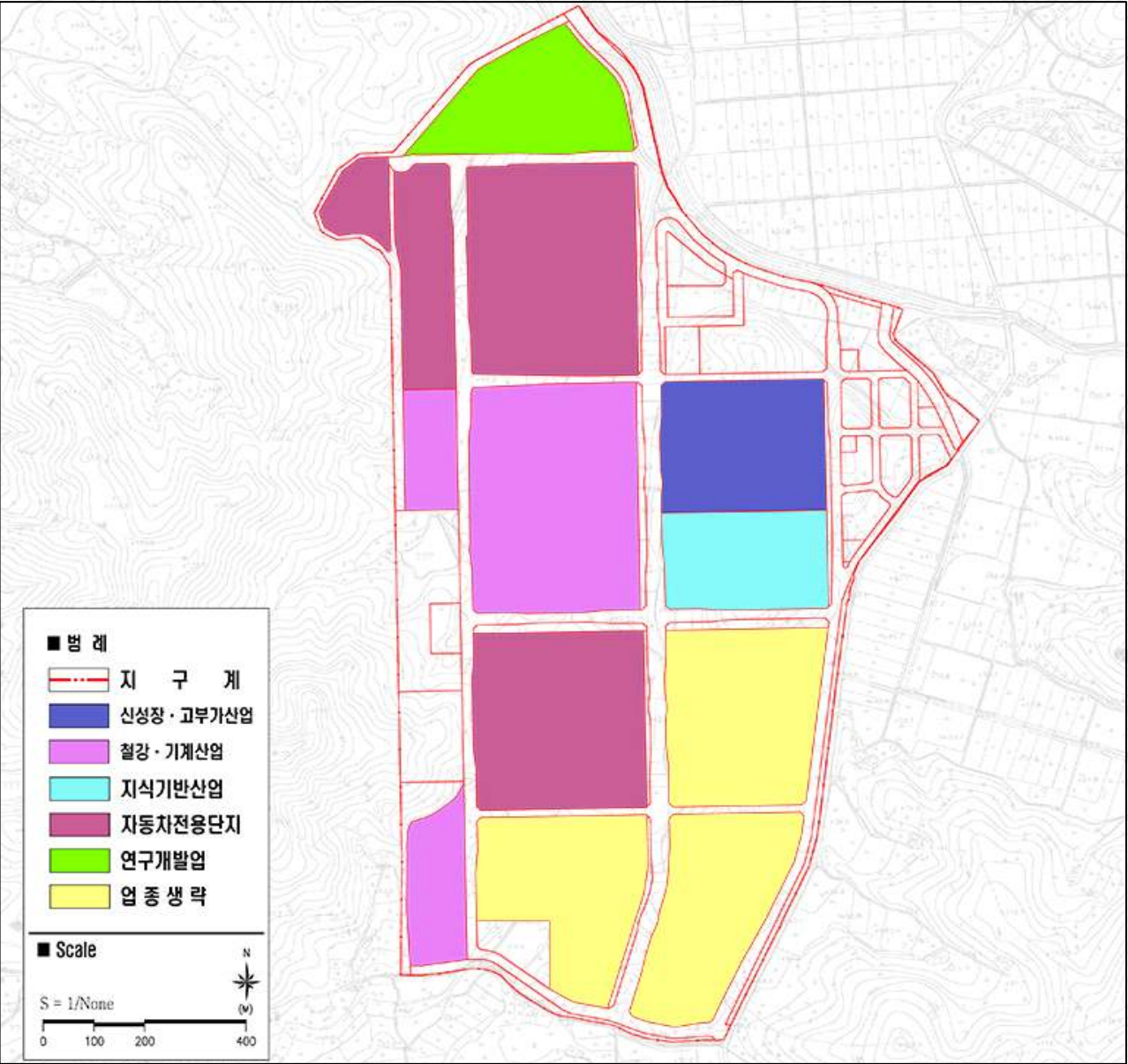
나. 업종별 구역도 (기정)



가. 업종별 배치면적 (변경)

구분	코드	업종명	면 적(㎡)	구성비(%)	비고
산업시설용지			1,094,280.6	100.0	
신성장고부가산업	C10	식료품 제조업	88,786.2	8.1	
	C11	음료 제조업			
철강기계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221,235.2	20.2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6,116.7	6.1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전용단지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0,649.3	31.1	
	M70	연구개발업	76,312.0	7.0	
	-	업종생략(산업시설 면적의 30% 이내, 업종제한 적용)	301,181.2	27.5	

나. 업종별 구역도 (변경)



다. 배치기준 (변경없음)

- 환경적 측면(대기, 수질, 소음, 진동)을 고려하여 배치
- 일반 및 첨단제조업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 공간 배치
- 지원시설구역은 주변마을 및 단지이용인구에 대한 서비스를 고려, 가급적 접근성을 고려 배치

6.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지원시설구역은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지 활동 측면을 고려하여 「산집법」 제2조제19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 설치 운영

나. 오·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오·폐수처리는 산업단지 내 오·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통합처리
- 시설 면적 : 기정 16,330㎡ → 변경 8,689.3㎡

7.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변경)

가. 분양계획 (변경)

(단위 : ㎡)

구 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 성 기 간	사 업 시행자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기정	1,640,662	-	-	1,640,662	1,640,662	1,640,662	2009년 ~ 2011년 ↓ 2009년 ~ 2013년 3월	(주) 탐글로리
	변경	1,651,848.7	288,730.6	873,246.2	-	873,246.2	1,161,976.8		
산 업 시 설 용 지	기정	1,096,110	-	-	1,096,110	1,096,110	1,096,110		
	변경	1,094,280.6	270,902.4	823,378.2	-	823,378.2	1,094,280.6		
지 원 시 설 용 지	기정	42,650	-	-	42,650	42,650	42,650		
	변경	49,868.0	-	49,868.0	-	49,868.0	49,868.0		
공 공 시 설 용 지	기정	308,532	-	-	308,532	308,532	308,532		
	변경	304,595.5	17,828.2	-	-	-	17,828.2		
녹 지 시 설 용 지	기정	173,370	-	-	173,370	173,370	173,370		
	변경	203,104.6	-	-	-	-	-		

나. 입주계획 (변경)

(단위 : 개사, m²)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입주업체	계	입주업체
향후계획	기정	-	-	1,096,110	-
	변경	-	-	1,094,280.6	-

다. 입주여건 (변경)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 (계획)	
도 로	기정	- 주 진입도로는 영광(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사업대상지와 연결 - 단지내도로 : L=10,348m, B=15~30m, A=220,092m ²
	변경	- 주 진입도로는 영광(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사업대상지와 연결 - 단지내도로 : L=10,222m, B=15~30m, A=237,592.9m ²
용 수	기정	- 상수도 • 공급능력 : 6,675m ³ /일 (공업용수 : 6,227m ³ /일, 생활용수 : 448m ³ /일)
	변경	- 상수도 • 공급능력 : 7,272m ³ /일 (공업용수 : 6,616m ³ /일, 생활용수 : 656m ³ /일)
전 력	기정	- 전력공급계획 : 105,007KVA • 영광변전소에서 공급예정
	변경	- 전력공급계획 : 117,016KVA • 영광변전소에서 공급
통 신	기정	- 통신공급계획 : 727회선
	변경	- 통신공급계획 : 626회선
환 경	기정	- 하수처리계획 • 단지배출량 : 4,269m ³ /일 (공업폐수 : 3,479m ³ /일, 생활오수 : 403m ³ /일) • 단지 내 오 · 폐수 처리장에서 통합처리
	변경	- 하수처리계획 • 단지배출량 : 2,946m ³ /일 (공업폐수 : 2,296m ³ /일, 생활오수 : 650m ³ /일) • 단지 내 오 · 폐수 처리장에서 통합처리

③ 사후관리계획

1. 목 표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변경)

가. 분양용지관리 (변경없음)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양도할 수 있음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분양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
-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분할기준 면적은 1,650㎡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로 함

나. 환경관리 (변경없음)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지방 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 내 공원과 차단하는 녹지를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와 주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

다. 안전관리 (변경)

- 관리기관은 「산집법」 제45조에 의하여 안전관리,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입주업체 기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위

협시설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설치할 때에는 관계법령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영광군 관내 파출소, 소방서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계 구축

나)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을 정하여 입주제한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사업장의 입주 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제시
- 산업시설 계획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을 최소화토록 각자의 배출허용기준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의거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할 것임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주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할 계획임
- 배출 유해물질은 법 제8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른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임
- 다량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도장공정이 있는 업체의 입주 제한과 작업장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장소는 밀폐화(Clean Room)하는 등의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임

다)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발생감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노력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산단 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조치를 하여야 함

라. 기반시설지원 (변경없음)

-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④ 관계도서 열람

- 관계서류는 영광군청(투자경제과 061-350-539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나 일반인에게 보입니다.